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5070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유신, 김형준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연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7. 3.
15. 접수 제78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수수료 환수 채권

1) 원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11.경 C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보험계약 모집 관련 및 정착지원 수수료를 선지급하였는데, 수수료 규정에 따른 수수료환수채권(이하 ‘이 사건 환수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2)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2012. 10.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098145호로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C)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9,926,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2. 11. 10.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C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5. 9. 11.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 E(상속지분 3/13), 망인의 자녀들인 F, G, C, H, B(상속지분 각 2/13)은 2017. 3. 1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7.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2/13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와 같이 수수료 환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있었던 2015. 9. 1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22. 2. 22.에 제기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7. 3. 15. 접수 제783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E, F, G, C, H은 2017. 3. 1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7. 3. 13.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C에 대한 수수료 환수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약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3. 13.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단독명의로 하는 대신 C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금전적인 보상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명의로 하는 대신 보상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인 C의 유일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별지